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5. 1. 3.)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나. 2025년 처우개선 결과 반영

1)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2) UDT/SSU 위험근무수당 10% 인상

3) 동력 P/G 위험근무수당 갑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통령령 제35182호(2025. 1.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① 규정 별표11 제4호가목2)에 따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의 자격기준, 지급액 및 지급대상 언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준 및 지급액 : 별표3

2. 지급대상 언어 : 별표4

②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③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갑종의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관이상: 487,9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463,300
원사 · 상사 · 중사: 458,200

별표 1에 갑종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전 및 해상특정요원	영관 이상: 443,5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356,400
	원사 · 상사 · 중사: 352,400
	하사: 245,700
	병사: 240,200

별표 1의 2.의 지급대상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사람 및”을 “사람,”으로, 같은 호 중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 (갑)의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관: 1,201,900
대위: 960,500
중위 · 소위: 738,200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3]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자격기준 및 지급액(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자격기준

구 분	외국어 능력 수준
1급	① SNULT 70점 이상, FLEX 850점 이상 ② 주재국에서 인정하는 어학 공인자격증 고급 이상 취득 ③ DELF/DALF C1 이상, DELE C1이상, TORFL 2단계 이상, 피테어학검정시험 GZ C1 이상
2급	① SNULT 60점 이상, FLEX 750점 이상 ② 주재국에서 인정하는 어학 공인자격증 중급 이상 취득 ③ DELF/DALF B2 이상, DELE B2이상, TORFL 1단계 이상, 피테어학검정시험 GZ B2 이상
3급	① SNULT 5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 ② 주재국에서 인정하는 어학 공인자격증 초급 이상 취득 ③ DELF/DALF B1 이상, DELE B1이상, TORFL 기본단계 이상, 피테어학검정시험 GZ B1 이상

2.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화폐 달러)

구분 \ 외국어 능력 수준	1급	2급	3급
제1종 제2외국어 (프랑스어·독일어)	300	250	200
제2종 제2외국어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 통용어 중 제1종 제2 외국어를 제외한 언어)	900	600	450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4]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 언어(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지역	국가(국제기구 소재지 포함)	통용어
아시아주	네팔	네팔어
	동티모르	테툼어, 마인어, 포르투갈어
	라오스	라오스어
	말레이시아	마인어
	몽골	몽골어
	미얀마	미얀마어
	방글라데시	벵갈어
	베트남	베트남어
	브루나이	마인어
	스리랑카	신탈리즈어
	아프가니스탄	파슈토어
	인도	힌디어
	인도네시아	마인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아세안 대표부)	마인어, 미얀마어, 타이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타이	타이어
	파키스탄	파키스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아메리카주	미국 뉴욕(주 국제연합 대표부)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캐나다 몬트리올(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주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과테말라	에스파냐어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파냐어
	멕시코	에스파냐어
	베네수엘라	에스파냐어
	볼리비아	에스파냐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아르헨티나	에스파냐어
	에콰도르	에스파냐어
	엘살바도르	에스파냐어
	온두라스	에스파냐어
	우루과이	에스파냐어
	자메이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칠레	에스파냐어
	코스타리카	에스파냐어
	콜롬비아	에스파냐어
	쿠바	에스파냐어
	파나마	에스파냐어

	파라과이	에스파냐어
	페루	에스파냐어
	니카라과	에스파냐어
유럽	그리스	그리스어
	네덜란드(주 네덜란드 대사관 겸 주 헤이그국제기구 대표부)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노르웨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덴마크	덴마크어
	독일	독일어
	라트비아	라트비아어
	러시아	러시아어
	루마니아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벨기에(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유 럽연합 대사관)	프랑스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네 덜란드어
	불가리아	불가리아어
	세르비아	세르비아어
	스웨덴	스웨덴어
	스위스	독일어, 프랑스어
	스위스 제네바(주 제네바 대표부)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	에스파냐어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어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오스트리아(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 시아어, 아랍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어
	이탈리아	이탈리아어
	조지아	조지아어, 러시아어
	체코	체코어

	카자흐스탄	카자흐어, 러시아어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타지키스탄	타지크어, 러시아어
	터키	터키어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벨라루스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	포르투갈어
	폴란드	폴란드어
	프랑스	프랑스어
	프랑스 파리(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프랑스어
	프랑스 파리(주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대표부)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핀란드	핀란드어
	헝가리	헝가리어
중동	시리아	아랍어, 프랑스어
	레바논	아랍어, 프랑스어
	리비아	아랍어
	바레인	아랍어
	모로코	아랍어, 프랑스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
	수단	아랍어
	아랍에미리트	아랍어
	알제리	아랍어, 프랑스어
	예멘	아랍어
	오만	아랍어
	요르단	아랍어
	이란	페르시아어
	이라크	아랍어
	이스라엘	히브리어, 아랍어
	이집트	아랍어
	카타르	아랍어
	쿠웨이트	아랍어
	튀니지	아랍어, 프랑스어
아프리카	가봉	프랑스어
	르완다	프랑스어, 키니아르완다어
	마다가스카르	프랑스어, 말라가시어
	모잠비크	스와힐리어, 포르투갈어
	세네갈	프랑스어

	앙골라	포르투갈어
	우간다	루간다어, 스와힐리어
	에티오피아(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겸 주 아프리카연합 대표부)	암하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적도기니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카메룬	프랑스어
	케냐	스와힐리어
	코트디부아르	프랑스어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①</u> <u>규정 별표11 제4호가목2)에 따라</u> <u>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에게</u> <u>지급하는 가산금의 자격기준, 지</u> <u>급액 및 지급대상 언어는 다음 각</u> <u>호와 같다.</u> <u>1. 자격기준 및 지급액 : 별표3</u> <u>2. 지급대상 언어 : 별표4</u> <u>②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u> <u>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u> <u>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u> <u>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u> <u>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u> <u>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u> <u>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u> <u>기간으로 인정한다.</u> <u>③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u> <u>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u> <u>급하지 아니한다.</u> <u>부칙<제000호, 2025.0.0></u> <u>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u> <u>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u> <u>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13